

협회 소식

1. 2010년도 정기총회 개최(2.18)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0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함

○부의안건 의결

- 의안 제1호 : 2009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함
- 의안 제2호 :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함
- 의안 제3호 :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함
; 제13대 회장에 이승호 회장이 경선으로 당선됨
; 이사·감사는 도별 대의원들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음(총회 당일 선출하지 못한 지역은, 추후 지역에서 선임된 결과에 따라 추인키로 함)

○3개항의 결의문 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

2. 구제역 발생 대응활동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 구제역 발생에 따라 원활하고 효과적인 상황 대처를 위해 협회 내부 상황실을 구성, 운영함
 - 상황실장(김봉석상무), 종합상황반, 홍보대책반
 - 공휴일 포함, 24시간 비상 근무 중
- 대농가 계도활동
 - 구제역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요청(1.28)
 - 설 귀성객 대상 구제역관련 축산물 안전성 홍보(2.12)
 - 구제역 방역 및 소독 강화,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 등 내용으로 농가대상 핸드폰 문자서비스 지속 실시

- 협회 홈페이지상, 관련내용 지속 공지 등

□ 구제역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

○구제역 살처분보상금(고능력우) 및 유대손실 보상평가 개선 건의(1.28)

- 고능력우 살처분보상금 평가 개선 : ▷순수익금 계산방식을 순수익률(평균유대수입의 22.6%)이 아닌 순수소득률(35%)로 계산, ▷이용잔여년수 적용을 1/2이 아닌 전부(100%)로 적용

※ 기존 농식품부 고능력우 살처분보상(안)
: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젓소가격 + (평균산유량 초과유대의 순수익금 × 이용잔여년수의 1/2)

- 유대손실 보상 평가방안 : 순소득률 적용

○구제역 보상 대책 회의(2.2)

○구제역 발생지역 현장 조사(2.2~2.4)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 개정고시(안) 설명회(2.19)

○가축방역협의회(2.23) 등

3. 낙농진흥회 관련 활동

□ 낙농진흥회 이사회(2.19)

○2009년도 결산(안), 직제규정 개정(안), 원유 배분규정 개정(안), 원유인수도규정 개정(안), 낙농지도업무 규정 개정(안), 집유기기정도관리규정 개정(안)은 원안 의결하고, 원유 집유비 및 검사비 규정 개정(안) 및 인사규정 개정(안)은 수정 의결함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 집유조합운영규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불합리하고

<협회 건의사항 반영 결과>

구분		기존 농식품부(안)	협회의견	반영결과
실처분 농가	실처분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산지가격 보상 • 고능력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잔여년수 1/2 - 순수익률 적용(22.6%수준) 	이용잔여년수 전부(100%) 순소득률 적용(35%수준)	반영 조정반영 (평균유대수입-생산비) (30%수준)
	생계안 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상한 14백만원 - 전국평균가계비 6개월분 	유대손실 반영(1차) 유대손실 100% 반영(2차) 순수익률(22.6%수준) 아닌 순소득률 (35%수준) 적용(2차)	반영 반영 조정반영 (평균유대수입-생산비) (30%수준)
	가족임 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임식자금 - 연리3%, 2년거치 3년상환 	무이자, 2년거치 5년상환	유대손실 반영시 제외 미반영
이동제한 조치농가	경영안 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상한 5천만원 • 연리3%, 2년거치 3년상환 	-	-
	수매	• 젓소 5세 이상	유질불량우 포함(1차)	젓소4세
공통			재해에 준한 지원(이자감면, 학자금지원 등)	반영

정부의 낙농대책안 추진과 연관이 있다는 의
혹이 있어 해당 조항들은 원안 유지시킴
-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제1조, 제9조, 제13
조, 제15조, 별지1호 원유생산계약서 제4조
- 집유조합운영규정 제3조

4. 육우고기 소비홍보 활동

1) 육우자조금 활동

□ 육우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최(2.8)

- 2010년도 제1차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축
산회관에서 개최함
- 의안 제1호 '2009년도 육우자조금 사업결
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의안 제2호 '2010년도 육우자조금 사업계
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 농식품부에 '09사업결산 및 '10사업계
획 승인 요청(2.11)

2) [정부지원]육우고기 소비홍보 사업

□ 우리육우사랑 캠페인 실시

- 홈페이지 익스프레스와 함께하는 '우리 육우
사랑 캠페인'
- 육우시식행사 및 할인판매, 육우홍보물 증정
행사, 사진부행사 및 지면매체 게재, 온라인
바이럴
-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행사
- 온라인 주부 커뮤니티 3곳에서 설날 상차림
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설 구매 최고기
90% 이상이 국산, 22.1%가 국내산 육우
-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배포
- 일간지 섹션지 유가 기획
- 조선일보 행복플러스와 유가 기획 진행 : 저
렴한 가격에 한우급 육질 '착한 고기' (2.16)

5.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활동

- 농협개혁 및 축산업 독립성·전문성 보장을 위한
활동 전개

○경제·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09.1.16)됨에 따라, 축단협에서는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 존중을 기본입장으로 대응활동을 전개 중에 있음

-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활동, 기자회견 개최, 의견 제출(국회/농식품부), 토론회 등

○이와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림에 따라, 이승호 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 축산업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농협법내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의 현행 준치와 축산경제 지주회사 별도 설립을 요구함(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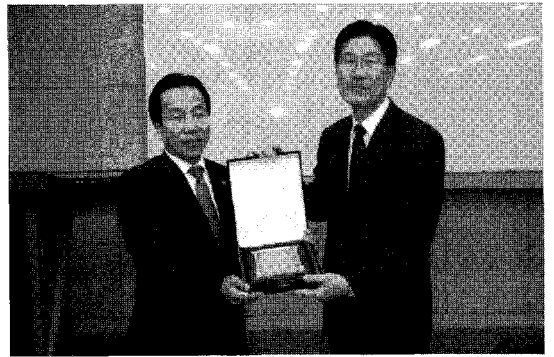
6. 기타 유관기관 회의 및 토론회 참석, 농가권의 대변활동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기획위원회(2.1) 및 본위원회(2.5)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현지실사단 회의(2.10)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운영실무협의회(2.19)

○축산경영학회 정기총회(2.19)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사회(2.24)

○농협중앙회·축단협 축산현안 간담회(2.26)

○OIE 육상동물보건규약(동물보호·복지 분야) 제·개정안 검토 협의회(2.26) 등

<농식품부 보상대책(요약)>

1) 살처분 농가

○현행 보상방법(A형)과 유대손실분을 가산하여 지원하는 대신 생계안정비용, 가족입식자금 지원은 배제하도록 하는 안(B형) 중에서 농가가 선택

생계안정자금

○지원상한액 : 1,400만원(전국 평균가계비 6월분)
-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차등 지원(보조)

현행대로 보상(A형)	유대 손실 보상(B형) : 고시 개정 입법예고(2.11)
시가 기준 살처분보상금 + 생계안정비용 (14,000천원/호) + 가족입식자금(2,300천원/두,용자)	시가 기준 살처분보상금 + 입식제한기간 유대순수익 ^{*)}

*주1 : [(최근1년 농가별 산유량 일평균Q) × (최근1년 농가별 수취가격Q) - 우유생산비 : 585원/Q 당, 통계청] × 180日(6개월) - 이자발생분(보상금 지급일부부터 입식제한종료일 까지 지역 농협 예금이자)

☞ 가족입식자금

- 지원두수·시기 : 살처분두수 이내,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산지시가 적용 용자지원(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 *농가가 가족입식후 증빙서(구매영수증) 제출시 지원

2) 이동제한조치농가

① 경영안정자금

- 지원액 : 호당 5,000만원 상한, 이동제한 조치일을 기준으로 소 사육두수에 지원 기준단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정
- 지원조건 : 용자(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 *기준단가 : 경영비와 이동제한조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② 수매지원

- 대상 : 이동제한조치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 수매시기 :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날부터 14일 경과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 이동제한지역 해제일까지 수매하고, 이후는 중단

○ 수매기준 : 축종·성별 등을 고려 일정월령 이상의 소

- 젖소 4세, 육우수소 18개월령 이상

○ 수매가격 :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공시하는 품종별 육질등급별 서울축공 지육평균가격 적용 (수매일기준 전전일로부터 실거래 5일간 가격)

3) 공통사항(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사항)

□ 정책자금 상환 연장

○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내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는 감면

□ 농신보 보증 한도 확대

○ 10억원(법인 15억원)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확대

□ 학자금 면제

○ 피해농가 자녀(중·고등학생) 학자금 1년치 면제

□ 세제혜택 등

○ 지방세 감면, 소득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피해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

□ 기타지원

○ 가축 매몰지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상수도 설치 지원 추진 등

사업부 소식

□ 2010년도 춘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도입 추진

○ 낙농가, 도(연합)지회, 낙(육)우회, 축산계, 유업체, 시/군/구 등에 2010년도 춘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도입 추진 중에 있음



○ 신청종자

- 목초종자 : 오차드그라스

- 사료작물종자 :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귀리,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 유채 등

□ 조사료 공급

○ 회원농가, 낙우회, 도지회 등으로부터 신청 받아 공급 중에 있음



○공급품목 : 톨페스큐짚, 페레니얼라이짚, 애뉴얼 라이짚, 블루그라스짚, 클라인건초, 티모시건초, 연맥건초, 밀건초

□ 경구용 고에너지 함유 대사촉진제 비타에너지 공급

○용 도 : 항케토시스, 지방간, 이등유, 무발정, 분만 후 식욕저하 시 경구투여



○성 분 : 나이아신, 프로필렌 글리콜, 솔비톨, 콜린

○상품명세 :

구 분	포	병
도착도	60,000원	105,000원
신청단위	1포(20KG)	1박스(30병×300ml)
배송방법	택배발송	

○특허 획득 : 특허 제 10-0832741(2008년 5월 21일)

□ 구충제 판콤

○용 도 : 젓소와 육우의 내부 구충제

○성 분 : 펜벤다졸 1.5g

○효 과 : 선충류, 폐충류, 촌충류, 흡충류의 성충 및 유충의 구충



○도착도 : 38,000원

○신청단위 : 1박스 (2병/40정, 20두/600kg)

□ 소 전문 육질개선제 사이언스 하이마블

○용 도 : 소 전문 육질개선제

○성 분 : 브로멜라인, 유카추출물, 토코페롤, 셀레늄

○효 과 : 육우의 육질 향상 및 육량 증량, 비육촉진

○도착도 : 210,000원

○신청단위 : 1포 (20kg)

□ 회원농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단체 상조상품

- 협회 회원가족의 경조사관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상조개발과 협약체결

- 1구좌 가입시 결혼, 장례, 회갑, 칠순 중 1행사 제공

- 1구좌 28,000원 × 125회(10년5개월) = 350만원

※ 2009년 9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변경됨

- 불입방법 : 자동이체(CMS)

- 가입기간 : 연중 가입

○교보생명 보험료 할인적용

-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협회회원들이 가입한 교보생명 상품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적용 중임

- 가입된 상품에 따라 0.5%~2% 할인

□ 간척지 사료작물재배단지 유해조수 피해에 따른 대책 및 보상건의

○당진지역 간척지 사료작물재배단지내 유해조수(기러기)에 의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농식품부 관계공무원과 현장실사(2010.02.02)를 실시하고, 환경부 자연자원과에 수렵허가(공포탄사용) 및 피해보상요청 공문(2010.02.10)을 발송함

협회비 납부현황

우리협회는 순수하게 회원들께서 납부하시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협회운영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협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2월 9일 현재까지 협회비 납부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협조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낙우회	금액	날짜	회원수
경북	영주낙농협회	750,000	01-25	
충남	공주연합회	6,150,000	01-26	
충북	음성군낙농협의회	2,750,000	02-06	
강원	횡성군연합	1,150,000	02-09	